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부정계약 확인 시 보고·처리체계 신설,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부정계약 다수 체결 기준 및 관련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 나.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증서 및 서류 추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7)
-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위 대포폰에 관한 위험사항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하여 세부 고지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7조의8 신설)
- 라.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전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관리·감독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 대한 신고 시기 등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37조의 9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기식별 및 사전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세부사항, 방법 등을 정하고, 모니터링 결과 관리를 규정함(안 제37조의10 신설)

바. 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 법을 위반한 대리점·판매점으로 인한 이용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고 시기를 규정함(안 제37조의11 신설)

사. 대리점·판매점의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부여된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 실태 점검 세부 내용과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기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의12 신설)

아.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안 제37조의 13 신설)

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판매점 관리 방안을 마련함(안 제65조)

차.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이용자 보호조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37조의27, 제37조의28, 제37조의29 신설)

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함. (안 제37조의30 신설)

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안 제37조의31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부정계약 다수 체결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란 최근 6개월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의 건수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가 6만건 이상인 경우: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 5 이상
2.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가 6만건 미만인 경우: 30건 이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을 “서류(「전자정부

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본문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확인 및 부정가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제2항 각 호에 있는 증서 및 서류에 부착된 사진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의21을 제37조의32로 하고, 제37조의8부터 제37조의20까지를 각각 제37조의14부터 제37조의26까지로 하며, 제37조의8부터 제37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8(고지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죄 이용 방지 확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범죄와 관련하여 개통을 요구·권유 받은 경우

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개통하는 경우

다. 개통 과정이나 목적을 타인에게 비밀로 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라. 본인의 실제 사용 목적과 달리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개통하는
경우

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공하는 경우 법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공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
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37조의9(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①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점검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리점 및 판매점의 위반행위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조치 절차에 관
한 사항

4.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제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률 제21499호가 시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장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신규로 기간

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한 후 해당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변경내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관리·감독 기준서에 관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7조의10(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① 법 제32조의4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
3. 대리점 및 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이행 여부
4. 명의도용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조치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2.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 이용자 민원 확인 및 민원 내용의 분석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1(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 계약 처리결과 보고) 법 제32조의 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37조의12(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① 법 제32조의4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이행여부

2. 법 제32조의4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 및 그 결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13(계약 해지의 기준) ① 법 제32조의4제9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근 6개월 동안 대리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대리점에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7부터 제37조의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7(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① 법 제32조의20제1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0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대응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 체계 및 담당자, 조직 내 정보공유 방법(또는 체계)

2.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및 통지 방법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수립
5. 이용자 보호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 및 현행화 방안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의28(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0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부가서비스의 가입 조치
2.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이용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3.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의 내용,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피해 확산방지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등 서면(전자문서 포함)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시사실과 이용자보호 조치의 이행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9(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① 법 제32조의 20제3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보호조치의 내용
2. 이용자 보호조치의 제공 기간
3. 이용자 보호조치로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또는 해지 방법 및 절차
4. 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이용자 불편 사항
5.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연락처

② 법 제32조의20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지

2. 고객센터 전담 창구 마련 및 이를 통한 해지

3.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조치 제공 후 제공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제2항에 따른 해지 방법 제공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해지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해지 완료 사실과 부가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제3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0(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 법 제32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7조의31(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22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역무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제 가입 현황, 요금 할인·감면 현황, 요금 실 납부 금액 현황,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현황, 프로모션 현황 등 요금에 관한 사항
2. 약정, 결합, 서비스 품질, 위약금, 멤버십 프로그램 등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3. 요금제 제공량 대비 실제 이용량, 약정 이용 현황, 사업자 전환 현황 등 이용행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 격차 해소 및 요금 정책 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대상 서비스,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시작일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

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의2·제8호의3·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를 “제5호(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으로 한정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제8호의5·제8호의6·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법 제32조의4 및”으로, “조 제5항제15호”를 “조 제2항제6호, 제5항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를 각각 제8호의6부터 제8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신고와 관련된 사항

8의4. 법 제32조의4제7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처리 결과보고와 관련된 사항

8의5. 법 제32조의4제8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관련 자료 제출 명령 및 제출 자료 검사를 포함한다) 및 위반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별표 2 제2호에 카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의2.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등록취소	
--------------------------	----------------	------	--

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	--

별표 3의5 중 “(제37조의9 관련)”을 “(제37조의15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에 서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의17. 법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2	350	700	1,0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부정계약 다수 체결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란 최근 6개월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의 건수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가 6만건 이상인 경우:</u> <u>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 5 이상</u> <u>2.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가 6만건 미만인 경우:</u> <u>30건 이상</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u>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류(「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본문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등을 ----. --

-----.

1. --- 주민등록증-----

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3. (생략)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
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신 설>

3. (현행과 같음)

4. 주민등록증

③ -----

-----, 다만 본인확인 및 부정가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제2항 각 호에 있는 증서 및 서류에 부착된 사진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8(고지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
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죄 이용 방지
확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제
3자로부터 명의도용, 금융
사기 등 범죄와 관련하여
개통을 요구·권유 받은
경우

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개통하는
경우

다. 개통 과정이나 목적을 타
인에게 비밀로 할 것을 요
구받은 경우

라. 본인의 실제 사용 목적과
달리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개통하는 경우

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
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9
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 설>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37조의9(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①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점검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리점 및 판매점의 위반행위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조치 절차에 관한 사항
4.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제

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률 제21499호가 시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장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신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한 후 해당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변경내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관리·감독 기준서에 관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10(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① 법 제32조의4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

3. 대리점 및 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이행 여부

4. 명의도용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조치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2.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 이용자 민원 확인 및 민원 내용의 분석

<신 설>

<신 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1(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 계약 처리결과 보고) 법 제32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37조의12(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① 법 제32조의4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이행여부

2. 법 제32조의4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 및 그 결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신 설>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13(계약 해지의 기준) ①

법 제32조의4제9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근 6개월 동안 대리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8 ~ 제37조의20 (생략) <신설>	② <u>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대리점에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u> ③ <u>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37조의14 ~ 제37조의26 (현행 제37조의8부터 제37조의20까지와 같음) 제37조의27(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① <u>법 제32조의20제1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u> ② <u>법 제32조의20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에는 다음</u>
--	--

<신 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대응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 체계 및 담당자, 조직 내 정보공유 방법(또는 체계)

2.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및 통지 방법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수립

5. 이용자 보호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 및 현행화 방안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의28(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0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부가서비스
의 가입 조치

2.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피
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이용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3.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 기
한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
의 내용,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피해 확산방지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등 서면(전자문
서 포함)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
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신 설>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시
사실과 이용자보호 조치의 이행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9(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① 법 제3
2조의20제3항제1호에 따른 이
용자에 대한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보호조치의 내용
2. 이용자 보호조치의 제공 기
간
3. 이용자 보호조치로서 제공되
는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또
는 해지 방법 및 절차
4. 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등
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전기
통신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이
용자 불편 사항
5.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연락처

② 법 제32조의20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지

2. 고객센터 전담 창구 마련 및 이를 통한 해지

3.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조치 제공 후 제공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제2항에 따른 해지 방법 제공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해지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해지 완료 사실과 부가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제37조의32제3항 각 호의 어

<신 설>

<신 설>

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0(최적요금제 고지 의무사업자) 법 제32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7조의31(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22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역무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제 가입 현황, 요금 할인

· 감면 현황, 요금 실 납부 금액 현황,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현황, 프로모션 현황 등 요금에 관한 사항

2. 약정, 결합, 서비스 품질, 위약금, 멤버십 프로그램 등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3. 요금제 제공량 대비 실제 이용량, 약정 이용 현황, 사업자 전환 현황 등 이용행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 격차 해소 및 요금 정책 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대상 서비스,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기간

	<u>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시작일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⑥ <u>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u>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u>
<u>제37조의21</u> (생략)	<u>제37조의32</u> (현행 제37조의21과 같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 · 제8호의3 · 제14호 · 제15호 · 제16호 · 제16호의2 · 제16호의3 · 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1. ~ 8의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① -----

----- 제5호(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으로 한정한다.) · 제8호의2 · 제8호의3 · 제8호의4 · 제8호의5 · 제8호의6 · 제14호 · 제15호 · 제16호 · 제16호의2 · 제16호의3 · 제20호(법 제32조의4 및 --- 조 제2항제6호, 제5항제15호)----.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신고와 관련된 사항

8의4. 법 제32조의4제7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처리 결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

8의5. 법 제32조의4제8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관련 자료 제출 명령 및 제출 자료 검사

<u>8의3.</u> ~ <u>8의6.</u> (생략) 9. ~ 22. (생략) ② · ③ (생략)	<u>를 포함한다) 및 위반사항 통</u> <u>보에 관한 사항</u> <u>8의6.</u> ~ <u>8의9.</u> (현행 제8호의3 부터 제8호의6까지와 같음) 9. ~ 2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6656